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08일

효자1동장인


세대주성명	·성명 ·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민	최 *민 2001-06-29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7길 (효자동1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9-21
윤 *성	윤 *성 1979-05-29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7길 (효자동1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9-21